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사업 시행 시
관리기준 준수 등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9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사업 시행 시 관리기준 준수 등	2
※ 참고자료	7
1.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복원 가이드라인	7

I. 제안경위

2026년 4월 16일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사업 시행 시 관리기준 준수 등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대상종 선정 기준, 복원 방법 타당성 평가, 서식지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3(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은 대상종 선정 기준, 복원 방법 타당성 평가, 서식지 개선·증식·방사 계획, 모니터링 계획, 전문가 참여 여부 및 증식·복원 과정의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¹⁾,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되고 있음²⁾.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단위 : 종)

연도	합계	멸종위기 I 급	멸종위기 II 급	비고
2022~현재	282	68	214	2022. 12. 개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멸종위기 야생

1) 자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하 생략)

생물에 대한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그러나 최근 김해 화포천 습지과학관 개관식 중 방사된 황새가 폐사한 사건⁵⁾을 계기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사업이 본래의 생태적 목적보다 홍보성 행사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5) 김해시에서는 “2025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2025.10.15.)”을 개최하면서, “황새 방사 퍼포먼스”를 공식행사로 개최하였으나(자료: 김해시 홈페이지), 방사된 황새 3마리 중 수컷 황새 1마리가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하였고, 사육장으로 옮겨졌지만 폐사함(자료: 연합뉴스, “김해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 때 방사한 황새 1마리 폐사 논란”, 2025.10.17., 2026.7.1.최종접속)

참고로, 황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의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양수기관, 김해시 소관)과 금강유역환경청(양도기관, 황새생태연구원 소관)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때의 관리기준에는 대상 종 선정 기준, 복원 방법 타당성 평가, 서식지 개선 계획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복원·방사 사업에 대한 기준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는 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등을 함께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음⁶⁾.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증식·복원은 ‘인공증식’에 해당하고, 현행법 체계에서 이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방법과 증식 시설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⁷⁾,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의 방사·이식·양도·양수를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⁸⁾이 시행될 예정이므로⁹⁾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와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 복원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임.

8) 동 개정법률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가능하던 “가공·보관”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방사·이식·양도·양수”를 허가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유통”을 삭제하였음.

9) 2026.5.7.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가결, 2026.6.9. 공포, 2026.12.10. 시행(예정)

참고자료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복원 가이드라인

□ 복원 시 절차별 고려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

○ 복원 사전 검토, 복원계획 수립, 복원 실행, 모니터링, 결과 평가 등



CONTENTS			
I. 가이드라인 개요	1		
1.1 가이드라인 목적 및 일반 사항	1		
1.2 복원 범위	2		
1.3 적용 범위	4		
II. 용어 정의	5		
III. 관련 법령	8		
IV. 복원 사전 검토	9		
4.1 개요	9		
4.2 복원 대상 선정	10		
4.3 재원지 보전관리 검토	10		
4.4 담당성 평가	11		
4.5 복원성 평가	11		
V. 복원계획 수립	19		
5.1 비전, 목적	19		
5.2 목표, 실행방안	20		
5.3 재원지 및 복원 계획	22		
5.4 모니터링 계획 수립	24		
5.5 재정계획 수립	25		
5.6 평가 체계	25		
5.7 복원계획(recovery plan) 작성	26		
		VI. 복원 실행	27
		6.1 계획(마스터) 실행	27
		6.2 재원지 환경 개선	28
		6.3 복원 재원지 관리	29
		6.4 서식지개선 계획	30
		6.5 종식	30
		6.6 재원지 관리	32
		6.7 평가 및 피드백	33
		6.8 재원지 관리 종료	34
		VII. 모니터링	36
		7.1 모니터링 조사	36
		7.2 모니터링 모니터링	36
		7.3 지속적 관리	38
		VIII. 결과평가	40
		IX. 정보의 배포	41
		X. 참고문헌	4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